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. 6. 10 선고 2015가단199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5. 5. 27.

판결 선고 2015. 6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안동시 D 전 146㎡ 지상 별지3목록 도면 기재 ㄱ 부분 3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E 임야 23㎡ 지상 별지3목록 도면 기재 ㄴ 부분 3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의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들은 안동시 E 임야23㎡의 공유자인 사실, 원고 A은 안동시 D 전 146㎡(이하 동, 지번으로 특정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별지1 목록 지상 피고 소유의 주택 및 화장실의 일부가 D 토지 별지3 도면 ㄱ 부분 3㎡(이하 '이 사건 ㄱ 부분'이라 한다), E 토지 별지3도면 ㄴ 부분 3㎡(이하 '이 사건 ㄴ 부분'이라 한다)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E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ㄴ 부분 지상 건물을, D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ㄱ부분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기, ㄴ 부분의 예전 소유자인 F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 각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피고는 집에 출입을 할수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ㄱ, ㄴ 부분에 대한 점유할 권리가 있어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, 을 제1호증의1 내지 10의 각 영상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덕기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안동시 구거 162㎡. 끝.

[별 지2]

부동산의 표시

①안동시 전146㎡.

②안동시 임야23㎡.

별지 3

지적현황측량 성과도

토지 소재	안동시 외 1 필		측 면	1 1200
측량자	2015년 1월 8일	측량성과도	2015년 1월 8일	
	지적기사 (인)	작성자	지적기사 (인)	

현황 표시

범례	의정
☐	건물 및 과잉설 의석선
☐	경계점명부호
☐	이계면간



면적 표시

지번 번호	면적(㎡)
	3
	3
이계면간	

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

2015년 1월 8일

대한지적공사 대구.경북본부 안동시지

* 건물 중첩면적은 실면적으로 발급되며 추후 건물외벽선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.

비고	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